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창원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39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19년 1월 31일

발 의 자: 김창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소영, 김제리, 김화숙, 이병도,
조상호, 최기찬, 최웅식, 한기영,
황규복 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관광산업에서 관광수요의 고급화 및 다변화, 융복합 트렌드 등으로 관광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. 특히 최근 k-beauty, k-wedding 등 체험형 관광과 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명소 발굴·홍보 등을 포함한 한류 관광, 전통음식을 테마로 한 미식투어나 대표사찰과 연계한 럭셔리 템플 스테이 상품 등을 포함하는 프리미엄관광 등이 성장하고 있음.
- 이러한 개별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고부가 특화관광 성장을 촉진할 필요성이 대두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정지원 사업에 의료관광 외에도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을 포함시키고자 함
(안 제12조제1항제1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12호의 “의료관광 활성화 사업”을 “의료관광,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